

Korean Tax Update

February 2017, Issue 32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 이는 2011 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 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 이는 2011 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신고서 작성 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는 등 소득세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16 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보기]

16 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5 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함.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2.6~2.20, 14 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24)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 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 천분의 18 에서 연 1 천분의 16 으로 인하함.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30 일 이내 단기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현물출자하는 경우 분할·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수관계자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으로 규정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 퍼센트에서 1.6 퍼센트로 조정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 신성장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추가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서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 및 5 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환수금액을 제외함.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직전 5 년 평균 수입금액이 500 억원 이하 및 특허권 등의 거래로 인한 직전 5 년 평균 수입금액이 70 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한정함.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영화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및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로 규정함.
-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함.
-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금액기준을 마련함.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신성장기술과 직접 연관되는 소재·공정 등의 기술을 추가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삭제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해당 서식을 개정함.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별보고서 서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
- 국가별보고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시 적용 가능한 정상이자율을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3 조 제 2 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거래의 경우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거래통화별 12 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5%를 가산한 이자율로 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되, 창업·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신설함.
-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열거함.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 분의 30 으로 조정함.

[예규·판례]

[판례 1]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 두 10232 판결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2]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 두 46963 판결

-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 3 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위 주식을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 등을 적용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판례 3]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 신청서는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 두 254924 판결

- 인지세법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 가목의 문언,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 점,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 5 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함.

[판례 4] 계열사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주식의 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 두 51535 판결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승계받은 경우에는,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그리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각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구별되는 점,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경우에 유형자산 외에 당초 승계받은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때에도 그 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지배목적 보유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판정하여야 하며,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 전체적으로 회사분할이라는 조직변경에 불구하고 그 사업이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폐지 역시 법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개별 사업부문이나 개별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판례 1] 고충신청을 수용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조심 2017 중 0341, 2017. 2. 13.

- 청구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례 2] 청구인들이 주주인 결손법인에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무상대여한 금액의 이자상당액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 2016 구 4195, 2017. 2. 10.

- 상증법 제 41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에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등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1 조의 4 에서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특정법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피상속인이 결손법인에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주인 청구인

들이 얻은 이익(증여재산가액)은 위와 같이 주식평가액과는 관계 없이 대출금액, 적정이자율 및 주식비율로 계산되므로, 금전대여를 전후한 1 주당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례 3]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 (공급시기 후 계좌이체된 현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6 부 3870, 2017. 2. 1

-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개통일)할 때, 정가로 공급되었을뿐 아니라, 이 건 할부 지원금은 동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된 경우도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 건 할부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할부지원금이 새로이 공급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이외의 가입비 등 다른 명목에 대한 것인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할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4]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 있음

조심 2016 전 2747, 2017. 1. 25.

-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이자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의 차이를 조정하여 주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자는 자금의 대여자인 법인의 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자금의 차입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례 5]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조심 2016 서 1418, 2017. 1. 23.

-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연간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은 그룹의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임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는 인건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들의 연간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중 기본급여는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6]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6 중 3172, 2017. 1. 17.

- 쟁점주식의 양수자는 사용인이므로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의 “친족관계” 혹은 제 2 항 제 2 호 등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양수자의 관계를 위 제 1 호의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양수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 1]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조특-177, 2017. 2. 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 1 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5563, 2017. 1. 24.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A/S 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자동차부품 포함)을 제공받고 그 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예규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재재산-32, 2017. 1. 1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 1438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 조 제 2 항 제 4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4 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